

1962年 第三次 定例理事會會議錄

日 時 1962年4月14日 午後4時
場 所 圖協事務局
出 席 閔泳珪 崔台鎬 張仁植 張一世 朴
 (無順) 黑永 白麟 李喆珪 金鍾洙 委任理
 事 3名

- 案 件**
1. 事務局報告.
 2. 今年度事業月別進行豫定計劃
承認 및 新規事業案檢討에 關하여
 3. 圖書館法에 關하여
 4. 事務局長認準에 關한件
 5. 事務局處務規定案承認에 關한
件
 6. 其他

開 會 4時20分. 閔會長司會

案件第1號 協會事務局經過報告(李鍾文局
長이 報告).

- ㄱ. 昨年부터 仁川稅關에 留置되었던 國際交換圖書 38箱子를 지난 4月11日 찾
어다 現在 分配中임.
- ㄴ. 지난 4月9日午後 「圖協月報」編輯委
員會를 召集하여 昨年6月以後 中斷되
었던 機關紙를 이번에 3,4月合併號로
續刊토록 決定하였음.
- ㄷ. 國庫補助金 8百萬圓中 百貳拾萬圓
이 刪減되었다는 消息듣고 詳細한 것
을 聞여보려 하였으나 實務者(文敎部)
가 不在中(教育中) 決定의 것인가
에 對해서는 數日內로 確認할것임.
- ㄹ. 會費徵收現況, 아직 23%밖에 納入
되지 않고 있다.

張一世: 經過報告中 지난번 理事會會議錄
朗讀의 要請이 있었으나 그동안 事務局

의 人事變更으로 아직 未備한 點을 閔
會長이 解明하고 다음 會議 때로 미루기
로 合議함.

案件第2號

李鍾文: 協會新年度 事業計劃書와 新年度
歲出豫算書와 若干의 項目差異가 있음.
그리서 어찌까지나 歲出豫算書에 따라
事業을 効果的인 것부터 먼저 重點으로
했으면 하고 大略의 月別進行豫定計
劃書를 作成했으나 予지음 圖書館法關
係로 奔走하여 좀더 具體의이고 効率性
있는 豫算에 비추어서 計劃書를 만들어
郵送하여 드리기로 하겠음.

案件第3號 李鍾文事務局長이 그동안 圖
書館法案이 法制室에서 文敎部로 뒤돌
아온 理由를 簡略히 說明하고, 文敎部와
協會가 合席하여 다시 建設的인 方向으
로 하자고 約束받음. 그동안 國立圖書
館崔館長任이 文敎部와 協會가 連席會
議를 가져서 建設的인 案을 만들자고 約
束받는데 많은 努力이 있었음을 말한바
에 對하여 會長이 圖書館協會를 代表
하여 崔台鎬氏께 謝意를 表함.

李鍾文: 連席會議를 어제(4月13日) 가진
豫定이었으나 사정에 依하여 來週初로
미룸.

崔台鎬: 協會의 總體의 意見을 이 자리
에서 決定하였으면 좋겠다.

張仁植: 從來의 案中에 우리들이 가장 重
要하다고 느끼는 問題를 強調하면 어떻
겠는가?

李鍾文: Mr. Croslin(크라더)이 協會案과

文教部案을 檢討分析하여 새로운草案을 作成하여 文教部와 法制處에 提出하였는데 그 內容은 建設的이고도 有益한 것으로 思料된다. 두 案의 缺點을 指摘하여 새로운 案을 만들어 項目마다 說明을 불었음(例로서 學點問題를 둘)이 크로스린案의 번역物이入手되는 터로 공理事들에게一部씩 붙여드리겠음. 文教部에서도 이 案을 參考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協會의 意見을 決定한다는 것도 一方的으로 決定하기는 難處하다고 생각한다.

崔台鎬：文教部에서 國立圖書館法을 따로 定한다는 것에 對하여 생각하여 불問題다. 또 特殊圖書館問題도 文教部에서는 法을 定할 必要性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學校圖書館까지 特殊圖書館으로 보고 있다.

朴熙永：協會案도 私立大學·國立大學圖書館 司書資格等을 公共圖書館 司書資格에 準하여 함께 끌은데 對해 애당초 부터 無理가 좀 있었다. 日本같은 나라는 圖書館關係法이 4, 5種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李鍾文：日本圖書館法은 英美法系에 따르고 있다. 大韓民國은 大陸法系에 따라 簡略하게 하자는 것이 政府의 見解이다.

崔台鎬：文教部은 公共圖書館에서 協會案대로 한다고 하면 司書不足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司書教師는 教育法에서 다루어야 할 問題라고 主張한다고 함. 여러 가지 異議가 많아서 難處하다.

李喆珪：現在 國際交換業務을 最高會議圖書館에서도 하고 다른 政府機關에서도 하고 二重三重으로 하고 있으며 國內圖書館과의 聯關도 한군데 集中해서 할수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即, 現國立圖書館과 最高會議圖書館과 같이 行政府나 立法府에 隸屬된것이 아니고 獨立된 中央圖書

館을 此際에 法으로서 만들었으면 좋리라 생각한다.

李鍾文：日本이나 美國은 다 그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原則의이다. 그러나 在形便으로 本法을 文教部에서 다투限에 있어서는 不可能한 일이라고 본다.

金鍾洙(全南大)：李喆珪氏의 案은 性格上 政府의 組織機構부터 바꾸어야 할 情의 것이다.

張一世：當面한 問題로 文教部와 合席하여 會議를 갖는데 協會側에서 代表를 1, 2人選出하여 會議에 臨해야 되지 않겠는가?

閔會長：李鳳順氏와 朴熙永氏 두理事選定함이 어떤가 하고 말한바 滿場一致로 可決함.

閔會長：案件第4號를 提議(事務局長認可本人退場 展歷書朗讀)

전면理事會에서 事務局長任命을 會에 委任을 받았으나 여전理事任들에 認准을 再請한바 滿場一致로 李鍾文를 贊成함.

案件第5號는 規程集례로 하기로 可決함.

案件第6號 其他事項

李鍾文：圖書館建築 및 用品委員會를 設하는 代表者名을 I.F.L.A. 用品委員會에서 알기 원한다는 要旨의 書信 있음을 報告.

朴熙永：現在 本協會에서 此分野活動別無하니 갑자기 누구를 指名하기는 難處하고 事務局長名으로 하도록 함을 可決함.

張仁植：前任 事務局長의 退職金問題를 자리에서 決定지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바

朴熙永：圖協處務規程에 例示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대로 施行함이 어떤가

閔會長：圖協處務規程대로 하되 早速한 時日內로 常務理事會를 召集하여 處理키로 可決함.

(閉會)